

의안번호	제920호
의결 연월일	2025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시설 근무환경
구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자	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5년 4월 11일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시설 근무환경

구성 및 지원 조례안

(박진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20
----------	-----

발의연월일: 2025년 4월 11일

발 의 자: 박진희·이정범·유상용

김성대·김정일·박병천

박봉순 의원

1. 제안 이유

- 충청북도교육청 관내 학교가 운영하는 급식시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과 학교급식관계자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급식관계자가 양질의 급식 제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조례 목적 및 정의에서 학교와 학교급식관계자에 대해 정의하고 그 밖에
용어는 「학교급식법」을 따르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나. 교육감의 책무에 안전한 급식시설 조성 및 학교급식관계자의 건강권
보장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제4조)
- 다. 급식시설 환경 개선·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급식시설 환경 개선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 라. 학교급식관계자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조리장 환기설비 개선과 인력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
- 마. 교육지원청 관내 급식시설 현안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급식시설개선협
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바. 학교급식관계자 폐암검진 지원 및 휴게시설, 휴게시간을 규정함(안 제

10조~제11조)

사. 교육·연수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불임

나. 비용추계: 불임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국 체육건강안전과, 노사정책과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시설 근무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각급 학교가 운영하는 급식시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급식관계자가 양질의 급식 제공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 중 공립·사립학교
 -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 중 공립학교
2. “급식시설”이란 제1호의 학교가 운영하는 「학교급식법」 제6조의 시설·설비를 말한다.
3. “학교급식관계자”란 소속기관의 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를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학교급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급식

시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학교급식관계자의 건강권 보장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급식관계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적절한 공기질 관리와 급식시설 환경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전한 급식시설의 근무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급식시설의 환경 개선 및 지원을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급식시설 환경 개선·지원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조리장 환기설비 개선, 급식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급식기구 현대화 등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관계자 대상 안전교육, 건강관리 지원 등 급식시설 안전문화 조성 및 예방시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학교급식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급식시설 근무환경 개선 등) ① 교육감은 급식시설 근무환경 조성
과 조리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급식시설을 개선하고, 급식기구를 확충할
수 있다.

② 급식시설을 개선할 때는 학교급식관계자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야 한다.

③ 급식기구 및 설비를 설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조리 중 유해물질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기구
2. 학교급식관계자의 노동 강도를 줄일 수 있는 기구
3.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기구
4. 그 밖에 교육감이 조리 환경 개선 및 조리 업무 효율화를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기구

제7조(조리장 환기설비 개선) 교육감은 학교급식관계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라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을 차단하거나 줄일 수 있는 적절한 환기·배기 설비와 공기정화장치
를 조리장 내에 설치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학교급식관계자의 인력 배치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안정적이고 원
활한 급식 운영을 위해 학교 규모에 따라 적절한 학교급식관계자 배치기
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관계자가 급식
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연가 또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
록 대체인력 확보 등 적절한 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급식관계자가 산업재해 등으로 학교급식 제공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업무의 범위 및 내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및 지원 방안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급식시설개선협의회) 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학교 급식시설의 현안 사항을 검토하고, 안정적인 운영 방향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급식시설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원은 교육지원청 관련 부서 및 학교급식관계자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정하여 구성한다.

1. 교육지원청 급식담당 및 담당자
2. 교육지원청 시설담당 및 담당자
3. 학교장 및 행정실장
4. 학교급식관계자
5. 기타 급식 및 시설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실무자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검토한 후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추진한다.

1. 학교의 개축이나 건물 신축 시 급식시설의 위치 및 공간 재배치
2. 급식시설의 이전·리모델링에 따른 급식시설 공간 재배치
3. 관내 학교 급식시설의 설계도면 공유와 개선방안
4. 기타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학교급식관계자 폐암검진 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관계자의 폐암검진 관련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매년 시행하고, 모니터링 결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검진 실시 및 검진비를 지원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급식관계자의 폐암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판정된 학교급식관계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검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휴게시설 및 휴게시간)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급식관계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학교급식관계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급식관계자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13조(교육·연수) 교육감은 학교급식관계자의 직무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제14조(협의체 구성) 교육감은 학교급식관계자의 폐암 검진에 대한 효율적

인 실행 및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학교급식법

제6조(급식시설·설비) ①학교급식을 실시할 학교는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학교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시설·설비의 종류와 기준)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의 종류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리장 : 교실과 떨어지거나 차단되어 학생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설로 하되, 식품의 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에 두어야 하며, 능률적이고 안전한 조리기기, 냉장·냉동시설, 세척·소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식품보관실 : 환기·방습이 용이하며, 식품과 식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하는

데 적합한 위치에 두되, 방충 및 쥐막기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식관리실 : 조리장과 인접한 위치에 두되, 컴퓨터 등 사무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4. 편의시설 : 조리장과 인접한 위치에 두되, 조리종사자의 수에 따라 필요한 옷장과 샤워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흙(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열·한랭·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7.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

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①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시설 근무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조리 업무 효율화를 위한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기구 확충
- 급식관계자 폐암 실태 확인 및 건강보호 방안 마련

2. 비용 발생 요인

- 학교급식시설 환경개선(시설현대화, 노후시설개선, 환기시설개선 등)
- 학교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 급식관계자 폐암 실태 확인을 위한 저선량 흉부 CT촬영에 따른 비용 발생

3. 관련조문

- 조례안 제6조(급식시설 근무환경 개선 등) 1항, 제7조(조리장 환기설비 개선), 제11조(휴게시설 및 휴게시간) 1항
- 조례안 제10조(학교급식관계자 폐암검진 지원 등) 제1항

4. 비용 추계결과

- 추계의 전제

가. 대상

- 급식시설 개선 대상교: 2027년까지 251교, 이후 연 16교 예정
- 급식기구 교체 및 신규 구입 신청교 매년 약 270교
- 폐암검진: 급식관계자(약 3,050명) 중 희망자

나. 전제

① 급식시설 환경 개선

- 추계기간은 2025~2029년까지 5년으로 하며, 2025년은 예산편성액으로 산출, 2026~2029년 시설개선 평균 비용에 물가상승률 5% 적용하여 산출

- 예산산출 적용단가: 충청북도교육청 시설사업 단가 및 학교급식기구 지원 단가 적용
- [참고자료 1] 환기시설개선 추진 현황(예산편성 기준)

(단위: 교)

개선 대상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계	비고
425	31	50	57	120	62		425	환기 단독
	15	17	4	25	24	20		타사업병행
	46	67	61	145	86	20		계

* 2024년 예산편성 학교로 2025년 환기시설 개선 완료 예정

② 폐암 검진

- 추계기간은 2025~2029년까지 5년으로 하고, 물가상승률은 반영하지 않음
- 산출내역의 단가(131,000원)는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제2023-303호)」 적용
- [참고자료 2] 2022~2024년 폐암 검진 현황

구분	기 준	검진대상(명)	검진인원(명)	검진율(%)
2022년	경력 5년 이상 또는 만 55세 이상 급식관계자	1,778	1,698	95.5
2023년	2022년 이상소견자 및 그 외 급식관계자	1,273	1,221	95.9
2024년	2022~2023년 이상소견자	695	514	74.0

※ 2023년: 2022년 이상소견자 216명 포함

다. 비용추계의 결과: 총 290,962,628천원

① 급식시설 환경 개선

- 2025년부터 5년간 289,783,628천원
 - 2025년: 시설비 총 소요액으로 산정
 - 2026~2029년: 2025년 학교별 시설비 평균산출 금액에 물가상승률 5% 적용하여 산정

－ 추계 대상학교

(단위: 교)

공사 구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계
환기 단독	120	62				182
환기 및 시설현대화 병행	25	24	20	16	16	101
계	145	86	20	16	16	283

② 폐암 검진

－ 2025년부터 향후 5년간 455,225천원

· 2022년 및 2023년 검진대상자 중 이상소견자 695명을 기준으로 산정

－ 추계의 대상자

(단위: 명)

연도 구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합계
급식관계자 폐암 검진 희망자	695	695	695	695	695	3,475
소계	695	695	695	695	695	3,475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합계
세입								
	소계(a)							
세출	추계	급식기구지원	4,666,000	5,245,000	5,507,000	5,782,000	6,071,000	27,271,000
		급식시설개선*	88,547,558	72,435,850	37,299,493	31,331,574	32,898,153	262,512,628
		급식관계자 폐암 검진	91,045	91,045	91,045	91,045	91,045	455,225
	소계(b)		93,304,603	77,771,895	42,897,538	37,204,619	39,060,198	290,238,853
□ 총 비용(b-a)			93,304,603	77,771,895	42,897,538	37,204,619	39,060,198	290,238,853

* 학교별 총사업비 기준으로 산출하며 2025년까지 시설비 실소요액으로 작성, 이후 시설사업비 5% 물가상승률 적용하여 산정

6. 작성자 : 기획국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기획국 노사정책과장 고현주